입찰용 평가 기준

2025.05.09. 제정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준용

1.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	배점한도(점)	비고
재무구조·경영상태	10	
수행실적	5	
기술·지식능력	5	
인력·조직·관리기술	5	
제안항목의 이해도	15	
상호협력의지	5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10	
원가절감 계획	10	
사후관리	15	
총계	80	

2. 가격평가

평가항목	배점한도(점)	비고
가격평가	20	상세기준은 아래 참고에 따름.
총계	20	

3. 결과

평가항목	점수	비고
기술능력평가		
가격평가		
총계		

4. 낙찰자 선정기준:
- 상기 3. 결과의 총계가 가장 높은 입찰자를 우선 협상자로 선정
- 우선 협상자와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차순위 입찰자를 협상자로 선정
- 선정 결과는 모든 입찰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입찰자의 문의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자에 해당하는 내용만 공개 가능.

참고: 가격평가 계산 기준

1.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해당입찰가격})}$$

여기서,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 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2.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text{평점} = \text{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frac{\text{최저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상당 가격}}\right) + 2 \times \frac{\text{추정가격의 80\%상당 가격} - \text{해당입찰가격}}{\text{추정가격의 80\%상당 가격} - \text{추정가격의 70\%상당 가격}}$$

여기서,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 해당입찰가격: 해당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3.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